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남도농특산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8. ~ 11. 2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4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최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06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의자 : 최현아 의원, 박계수 의원,
이복남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최병배 의원,
장경순 의원, 오행숙 의원,
이영란 의원, 강형구 의원,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어린이집 및 통학버스 등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안 제5조)
- 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선 보호(안 제6조)
- 마. 보육교직원 등 안전교육(안 제7조 ~ 제8조)
- 사. 공동주택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지대(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붙임 1】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시장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및 보육교사 교육 등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최현아

참고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순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장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28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장경원 의원, 이복남 의원,
발의자 : 서선란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순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안 제4조)
- 라. 표지판의 설치 및 설치장소(안 제5조 ~ 제8조)
- 마. 비용부담(안 제9조)
- 바.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붙임 1】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순천시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천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제5조에서 제7조에 따라 공사 및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또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에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참고

관계법령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아래의 각호의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1호 및 1-1호, 1-2호,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

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하는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

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29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의자 : 정홍준 의원, 서선란 의원,
장경원 의원, 장경순 의원

1. 제정이유

-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적용 범위 및 지원대상과 내용(안 제4조~안 제6조)
- 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붙임 1】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순천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실비지급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은 경우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정홍준

사회보장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29.	
2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2. 10. 17.	
3	광주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23.	
4	광주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24.	
5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30.	
6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2. 10. 15.	
7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28.	
8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2. 17.	
9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8.	
10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8. 6.	
11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12. 17.	
12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30.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12. 20.	
14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9. 30.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11.	
16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3. 8.	
17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7. 16.	
19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7. 12.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1. 5.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11. 29.	
22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6. 3.	
23	부산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8. 13.	
24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2. 31.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4. 2.	
26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0. 1.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9. 19.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4. 5.	
29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	2018. 10. 31.	
30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7. 6.	
3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8. 1.	
32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2. 14.	
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2. 3.	
34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5. 20.	
3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2. 1. 26.	
3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5. 19.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9. 29.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9. 30.	
39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7. 16.	
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1. 12.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8. 13.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3. 18.	
4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0. 29.	
44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16.	
45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1. 11.	
46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2.	
47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8.	
48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3. 16.	
49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2. 4. 15.	
50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5. 10.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11. 5.	
52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5. 14.	
53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9. 11.	
54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0. 8.	
55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31.	
56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11. 8.	
57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2021. 8. 12.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사업구분	일반업무
부서(팀)	장애인복지과(희망복지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주거정리·집 청소에 어려움이 있거나 방치한 고위험대상자 사례관리 필요
- 우령각시, 자원봉사자(단체) 연계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품앗이 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업대상 : 스스로 가사활동 및 청소가 어려운 취약계층
- 사업내용 : 주거취약계층 지원 + 시민참여(자원봉사) 연계
 - (클린사업) 대상자별 연간 5~6회 관리 / 집수리, 청소, 방역, 인식개선교육
 - (우령각시) 우령각시 2인 1조 방문 / 빨래, 청소, 밑반찬만들기, 정서지원
 - (자원봉사) 자원봉사단체, 739부대,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
- 운영방법 : 순천지역자활센터 '클린사업단', 자원봉사센터 협업 추진
- 사 업 비 : 90백만원(국 17.5, 도 0.8, 시비 41.7, 기타 30)

□ 추진실적

- 홈 클린사업 참여 기관 업무 협약(시-순천지역자활센터)
- 주거취약계층 홈 클린사업 실시 : 286가구(클린 14, 우령각시 47, 이동빨래방 225)
 - 민·관 협업 추진 : 7개기관 450명 참여
- ※ 시, 마중물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자원봉사센터, 별량면 군부대, 지역자활센터, 복지관
- 클린사업 종료 가구 사후 관리 : 14가구(고난도 사례관리 3, 서비스연계 11)

□ 추진계획

- 클린사업 대상가구 수요조사(2차) 및 사업 실시 : 2022. 7. ~
 - 하반기 300가구(클린사업 20, 우령각시 50, 이동빨래방 운영 230) 추진
- 클린사업 참여 자원봉사자 모집 : 수시
- 클린사업 종료 가구 사후 관리(서비스연계, 인식개선교육 등) : 수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2년 기 확보	22년 2회추경	2023년	2024년~	비고
계	280	90	-	95	95	
국비	52.5	17.5	-	17.5	17.5	
도비	2.4	0.8	-	0.8	0.8	
시비	125.1	41.7	-	41.7	41.7	
기타(비예산)	100	30	-	35	35	

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30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장경순 의원, 양동진 의원,

발의자 : 장경원 의원, 최현아 의원,
서선란 의원

1. 제정이유

-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모성 등의 의무(안 제4조)
- 다. 임신·출산, 난임극복 지원사업(안 제5조 ~ 제6조)
- 라. 임신부의 날(안 제7조)
- 마. 다태아 임신부 등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안 제8조 ~ 제9조)
- 바.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안 제10조)
- 사. 예산지원 및 포상(안 제11조 ~ 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붙임 1】

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임신·출산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妊)”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

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임신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신·출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 임신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4.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5.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난임부부의 난임극복을 위한 일반의약품(또는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주민자치센터·인구정책부서에 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임신·출산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 사업
 - 임신부의 날 행사
 - 다태아 임신부 등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장경순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영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

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0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인력의 선택과 집중
- 국·소별 기능 중심 개편을 통한 복·융합 행정 구현
- 국 단위 정책·기획 기능 강화, 미래 성장동력 집중 지원

2. 주요내용

- 기구변동(총괄)

구분	현행	개편	증감
총계	<u>11국·소</u> , <u>57담당관·실·과·소</u> , 3전문위, 24읍면동	<u>11국·소</u> , <u>57단·실·과·소</u> , 3전문위, 24읍면동	-
본청	5국, <u>1담당관·3실·31과</u>	5국, <u>1단·3실·33과</u>	+2과
의회	1국, 3전문위	1국, 3전문위	-
직속기관	2소(<u>9과</u>)	2소(<u>9과</u>)	-
사업소	3소(<u>10과</u>), <u>3소</u>	3소(<u>9과</u>), <u>2소</u>	△1과, △1소
읍면동	1읍·10면·13동	1읍·10면·13동	-

○ 기구변동 세부내역

구 분		기구 변동 내역
4급 기구	명칭변경 (3)	- 자치행정국 → 행정안전국 - 안전도시국 → 도시디자인국 - 일자리경제국 → 미래산업국
5급 기구	과 신설 (3)	일류도시기획단, 청년정책과, 식품위생과
	과 분리 (2)	- 교통과 → 교통정책과 / 교통관리과 - 생태환경과 → 기후에너지과 / 환경관리과
	과 폐지 (4)	시민주권담당관, 아동청소년과, 공공시설과, 보건사업과
	과 통합 (1)	투자일자리과 + 지역경제과 → 경제진흥과
	명칭변경 (15)	- 자치혁신과 → 자치행정과 - 신청사건립추진단 → 신청사건립과 - 미래산업과 → 신성장산업과 - 정보통신과 → 디지털정책과 - 체육진흥과 → 체육산업과 - 체육시설관리소 → 체육시설운영과 - 가족보육과 → 보육아동과 - 장애인복지과 → 가족복지과 - 도시과 → 도시계획과 - 교통과 → 교통관리과 - 도시재생과 → 도시공간재생과 - 보건위생과 → 보건의료과 - 감염병관리과 → 질병관리과 - 생태환경과 → 환경관리과 - 산림과 → 산림자원과
	부서이관 (5)	- 안전총괄과 (안전도시국 → 행정안전국) -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국 → 미래산업국) - 체육시설관리소 (사업소 → 문화관광국) - 공원녹지과 (생태환경센터 → 도시디자인국) -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국 → 도시디자인국)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있음(의견청취 : 2022. 10. 28. ~ 11. 4.)

의견제출	주요내용	검토
투자일자리과	• (국 명칭변경) 미래융합산업국 → 미래산업국 • (과 명칭변경) 일자리경제과 → 경제진흥과 • (과 명칭변경) 미래청년정책과 → 청년정책과	반영
평생교육과	• (업무이관) 청소년, 잡월드 업무 → 청년정책과	일부반영
노인복지과 외 4	• (과 명칭변경) 고령사회정책과 → 노인복지과 - 가족보육과 → 보육아동과 - 장애인복지과 → 가족복지과	반영
도시과	• (국 명칭변경) 창조도시국 → 도시디자인국	반영
공원녹지과	• (과 명칭변경) 푸른녹지과 → 공원녹지과	반영
국립정원운영과 외 2	• (국 명칭변경) 정원도시센터 → 순천만관리센터 • (과 명칭변경) 정원정책과 → 국가정원운영과 - 정원후방산업과 → 정원산업과 - 순천만자원과 → 순천만보전과 * 순천만 · 국가정원 등 브랜드 가치 보전	반영
문화예술회관	• (부서 존치)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적 측면 고려, 시립예술단 운영 등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함께 통합 논의 필요	반영

※ 팀 신설·폐지, 부서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개정 시 검토 반영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제14조(예고의 예외) 예고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3. 사업소·출장소 등의 설치조례, 정원조례, 직제규칙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28.(가족보육과-2564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31.(기획예산실-154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항 중 “시민주권담당관”을 “일류도시기획단”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주권담당관”을 “일류도시기획단장”으로 하고, 제1호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복합 메가 프로젝트 추진(광역자원화시설 건립, 예술의 전당 건립 등)
2. 시 중장기 발전계획(2050미래계획) 총괄
3. 시 역점사업 발굴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 제11호,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시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을 “행정안전국,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시민복지국, 도시디자인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목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를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로 하고, “자치혁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신청사건립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7조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4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 전반 사무 및 공인 관리
2. 직원 복무지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3. 대·내외 의식 및 행사 지원
4.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 관리
5. 시정자료 수집, 보존, 활용

6.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7. 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 관리
8. 공무원 교육 및 상시학습 관리
9. 시정 주요업무 평가
10. 공무원 인사, 단체교섭, 노동조합 업무
11. 국·내외 자매결연, 남북교류 업무
12. 공무원국외여행, 서울사무소 운영
13.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
14. 읍면동 예산 관리 운영, 행정지도
15.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16.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17. 시민참여 업무
18. 자원봉사 지원
19. 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20. 지역안전관리계획, 안전문화운동 추진
21. 재해대책본부 구성·운영
22. 중대재해 예방계획·지도·점검
23. 사회재난관리 총괄·조정
24. 자연재난 대응, 예방대책, 피해복구
25.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회안전망 구축
26. 민방위 비상대비 계획수립, 편성·교육
27. 지방세 세입 결산 총괄
28. 지방세 부과, 감액에 관한 사항
29. 개별주택가격 및 특성조사
30.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세무조사
31.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 부과
32. 시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33.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관리
34. 체납세 징수, 체납자 관리

35. 세외수입 세원 발굴, 부과징수, 수납
36.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공매처분
37.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결산
38.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공급계약
39. 자금운용·배정, 복식부기 등 재정관리
40. 공유재산 관리·보존, 대부, 유지 관리
41. 본청·읍면동 신축, 증축, 개보수, 유지

제6조 중 제목 “(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를 “(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자리경제국에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미래산업과” 를 “미래산업국에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경제진흥과, 기후에너지과, 디지털정책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을 “미래산업국장” 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2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년정책 및 일자리 총괄
2. 청년활동 지원 전반
3. 순천 미래산업·신성장 동력사업 개발
4. 초경량 마그네슘 육성 사업
5.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6. 산업·농공단지 개발, 입주, 조성
7.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업무
8. 잡월드 운영, 전시, 홍보, 수익사업, 시설관리
9.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10. 소상공인 지원 업무 전반
11.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12. 전통시장 육성발전, 시설현대화, 관리
13. 지역 노·사·민·정 협력, 노사쟁의 조정
14. 기후정의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15.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6.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전기, 가스, 석유 등 지역에너지 관리
18.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20.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환경정책 추진
21.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22. 공공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업무 추진
23. 디지털 정책 및 산업 육성
24.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25. 메타버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6. 지역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7.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28. 전산 및 행정정보화, 홈페이지 관리
29.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제7조 제1항 중 “평생교육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운영과”를 “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부터 제26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도시정책 추진 및 지정, 문화특화지역조성
2.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교류 추진
3. 문화예술 행사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문화재정책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보수·문화재 공원화 사업
6. 문화재 지정, 활용사업, 세계유산 관리
7. 기독교박물관 전시·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8.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9.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10. 관광진흥 종합기획, 마이스산업 육성
11. 국내·외 관광홍보, 순천 대표축제 추진

12. 관광시설 및 휴양자원 인프라 구축
13. 체험관광 운영 및 수학여행단 유치
14. 관광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운영·점점
15.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16.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17.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18. 교육도시 육성, 교육여건 개선
19. 대학 상생 및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20.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사업 지원
21. 청소년 정책 추진, 청소년 단체 지원
22.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23. 문화건강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운영지원, 독서정책 개발
25. 작은도서관 신설, 프로그램 운영
2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27. 생활체육 육성, 체육단체 지원·관리
28. 스포츠산업 진흥, 체육행사 개최·유치
29. 체육시설 확충, 소규모 시설 지원
30.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1. 체육 및 교양지도에 관한 사항
32.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3. 공공체육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제1항 중 “노인복지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부터 제31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 복지정책 수립 및 총괄
2. 생애주기별 복지 시책 추진
3. 공동모금회, 긴급복지,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4. 사회복지시설 설치, 복지시설 운영·지원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
6.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행사 운영
7.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추진
8.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업무 추진
9. 장묘문화 개선, 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
10.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 노인복지 시책
11. 노인복지관 등 운영·관리
12. 어린이집 관리, 보육업무 지원
13.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추진
14.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5.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 아동 서비스 제공
16. 지역아동센터 지원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8. 다문화, 건강가정, 한부모가족 지원
19. 여성정책 개발, 여성단체 지원
20.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총괄
21.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 단체 관리
22. 여성문화대학 운영, 프로그램 개발
23.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민원업무 제도개선
24. 개발행위(농지, 토지, 산지 등) 허가 및 협의
2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6.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협의, 용도변경
27. 가족관계등록 사무, 제적부 관리 보관
28. 이동민원실 관리·운영
29.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30. 지적관리, 지적측량, 토지이동 업무

31. 도로명주소 관리·운영
32.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33. 지적재조사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

제9조 중 제목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를 “(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공공시설과, 교통과” 를 “도시디자인국에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시공간**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6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정책 수립 및 총괄
2.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3. 도시개발 불법행위 단속
4. 공영개발, 택지개발지구 조성·관리
5.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6.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 교통 이동망 조성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8. 대중교통 정책 개발, 교통영향평가
9.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10.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무인공영 자전거 운영
11.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인허가 및 취소
12.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
14.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조사 및 처리
15.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6. 주차장 조성·관리
17.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8. 자동차 등록, 변경, 말소 등 사무 전반

19. 원도심 공간 혁신에 관한 사항
2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뉴딜사업 공모
21.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22. 도시재생 연관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국유재산 관리 및 건설분야 편입토지 보상
25.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6. 수자원 계획, 조사, 관리, 이용사업 추진
27.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28. 도심 침수예방시설(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
29.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총괄 계획 및 지침 수립
30. 주택건설계획 수립
31.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장감독
32.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3.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3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관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심의, 건축디자인심의
35.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36.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37. 도로개설사업 설계·감독
38. 도로 정비·유지관리, 생활민원 처리
39. 구조물(교량·육교·지하차도 등) 관리
40. 도시녹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1. 도시숲 조성 및 관리
42. 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43.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관리

제12조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를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로 한다.

제17조 제1호부터 제30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정업무의 기획·조정
2. 농촌 발전계획 수립
3. 농업 유관기관 및 단체 관리
4. 스마트팜 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분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7.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8. 농촌자원 분야 발굴, 개발
9. 농촌관광 및 농촌 휴양자원 개발·추진
10. 농촌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1.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12. 농업인 인력육성·지도
13.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직불금 지원
14. 채소·원예 육성사업, 기반조성
15. 과수·특작 육성·지원
16. 매실산업 육성, 생산기반 확충
17.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업무
18. 농산물 유통·판촉, 양곡관리 업무
19. 푸드플랜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0. 로컬푸드 육성, 직매장·직거래장터 운영
21. 지역 대표미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가공·수출 육성, 가공센터 관리
23. 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 무상급식) 추진
24. 도매시장 운영, 도매시장 법인 관리
25. 축산단지 조성, 축산농가 경영상담·기술보급, 축산시설 현대화
26. 반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반려동물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
29. 가축 방역,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
30. 야생동물 보호·관리, 야생동물센터 운영
31. 농업 기술 개발, 과수·특용작물·축산 사양관리 등 기술 보급
32. 벼, 식량작물 등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33. 종합검정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34. 지역특화작목 개발, 화훼 재배기술 보급
35. 도시농업 육성, 지원, 교육훈련
36. 경관농업 활성화
37. 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20조로 제1호 가목에서 처목을 삭제하고, 가목에서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태환경센터

-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약
- 나.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노사협의회 운영
- 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 지도·단속
- 라. 재활용품 수집·운반·판매, 업사이클센터 운영
- 마. 신규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폐기물매립·자원화 업무협약
- 바.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운영
- 아.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 자. 환경배출시설 허가, 신고 및 준공처리
- 차. 생활환경 민원 처리
- 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수질개선사업 실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 타. 산지자원화,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 파. 산불보호, 산림재해방지 등 산림보호 추진
- 하. 산림복지단지, 산림특화작목 육성
- 거. 도립공원 탐방로, 시설물 설치·유지
- 너.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같은 조 제3호 중 가목부터 버목까지를 삭제하고, 가목부터 처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도시 정원정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나.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 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전반
- 라.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 축제 추진
- 마.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관리·운영
- 바. 순천만국가정원 수익사업 기획·추진
- 사.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판매·정산, 식음시설·영업시설 운영
- 아. 스카이큐브 운영 전반
- 자. 순천만국가정원 기반시설 관리
- 차. 순천만국가정원 수목·잔디 식재 및 관리
- 카.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연출 및 생산
- 타. 정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파. 정원후방산업 육성
- 하. 정원산업벨트 조성, 조경·화훼산업 육성
- 거. 정원용 식물 연구, 정원소재 개발, 정원산업 컨설팅 등 정원지원센터 운영
- 너. 한평정원페스티벌 등 정원문화 육성 및 인프라 구축
- 더. 가든스쿨, 시민정원사 등 정원교육 추진
- 러. 습지 보전·운영 등 총괄에 관한 사항
- 머. 순천만습지 보전·운영 종합계획 수립, 국제적 습지 네트워크 조성
- 버. 순천만습지 생태체험프로그램 추진
- 서. 순천만습지 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 어. 해양지도, 생태체험선 운항·관리
- 저. 해양수산진흥, 어촌 6차산업 추진, 어촌인역량강화, 양식어장 관리
- 처. 순천만 갯벌복원, 생태계 조사 및 연구

같은 조 제4호 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뿌리깊은박물관 운영 및 관리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 “별량장길 30” 을 “별량장길 38” 로 하고,
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 “후곡안길 97” 을 “모후실2길 2” 로 한다.

별표 2 순천만관리센터 위치 “남승룡로 66” 을 “국가정원1호길 47” 로 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순천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2.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3.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미래산업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한다.

4.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한다.

5.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한다.

6.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하고,
“자치혁신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7.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하고,
제2호 “일자리경제국장” 을 “미래산업국장” 으로 하고,
제4호 “안전도시국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한다.
8.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9.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10.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11.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시민주권담당관” 을 “일류도시기획단” 으로 하고,
“자치행정국” 을 “행정안전국” 으로 하고,
제35조 제2항 제3호 중 “일자리경제국” 을 “미래산업국” 으로 하고,
마·바목을 삭제한다.
제35조 제2항 제4호 중 “안전도시국” 을 “도시디자인국” 으로 한다.
12.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 을 “미래산업국장” 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한다.
13.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14.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한다.
15.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한다.
16.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으로 한다.

17.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18.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도시과장” 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하고,
“교통과장” 을 “교통정책과장” 으로 한다.
19.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중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20.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21.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22.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행정안전국장” 으로 한다.
23.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 을 “도시디자인국장” 으로 하고,
“자치혁신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24.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를 “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로 한다.
26.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 을 “경제진흥과장” 으로 한다.
27.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장” 을 “평생교육과장” 으로 한다.
28.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2항 중 “도시과장” 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한다.

29.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과” 를 “도시계획과” 로 한다.

30.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교통과장” 를 “교통정책과장” 로 한다.

31.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 를 “식품위생과장” 로 한다.

32.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산림과장” 을 “산림자원과장” 으로 한다.

33.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산림과” 를 “산림자원과” 로 한다.

[별표 1]

보건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순천시 보건소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순천시 일원
순천시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	순천시 팔마3길 14-7(연향동)	순천시 덕연동, 조례동 주공아파트 5단지
순천시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2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상삼리, 복성리
순천시 승주읍 보건지소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94	승주읍 일원
순천시 주암면 보건지소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86	주암면 일원
순천시 송광면 보건지소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	송광면 일원
순천시 외서면 보건지소	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440	외서면 일원
순천시 낙안면 보건지소	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	낙안면 일원
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별량면 일원
순천시 상사면 보건지소	순천시 상사면 상사초등길 36	상사면 일원
순천시 황전면 보건지소	순천시 황전면 백야중길 12	황전면 일원
순천시 월등면 보건지소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571	월등면 일원
순천시 승주읍 도정 보건진료소	순천시 승주읍 도정송정길 11	도정리, 구강리 일원
순천시 주암면 운룡 보건진료소	순천시 주암면 운룡2길 25	운룡리, 비룡리 일원
순천시 주암면 어왕 보건진료소	순천시 주암면 한동길 100	어왕리, 백록리, 대구리 일원
순천시 주암면 창촌 보건진료소	순천시 주암면 주목로 12	행정리, 갈마리, 주암리, 오산리, 창촌리, 북다리, 문길리, 요곡리 일원
순천시 외서면 도신 보건진료소	순천시 외서면 도신길 96	도신리, 반용리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	순천시 송광면 모후실2길 2	후곡리, 삼청리, 월산리 일원
순천시 낙안면 신전 보건진료소	순천시 낙안면 금산신전길 17	금산리, 평사리, 목촌리, 석흥리 일원
순천시 낙안면 창녕 보건진료소	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209	창녕리 일원
순천시 별량면 송기 보건진료소	순천시 별량면 송산송기길 140	구룡리, 송기리, 죽산리, 금치리 대룡리 일원
순천시 별량면 마산 보건진료소	순천시 별량면 마산길 132	마산리, 무풍리 일원
순천시 별량면 학산 보건진료소	순천시 별량면 장산길 96-1	학산리, 대곡리 일원
순천시 상사면 마륵 보건진료소	순천시 상사면 민속마을길 280-8	마륵리, 용암리, 비촌리, 오곡리 일원
순천시 상사면 쌍지 보건진료소	순천시 상사면 쌍지길 6	쌍지리, 초곡리 일원
순천시 해룡면 선월 보건진료소	순천시 해룡면 선월길 43	선월리, 신성리 일원
순천시 해룡면 하사 보건진료소	순천시 해룡면 하사길 79	하사리, 상내리, 농주리 일원
순천시 서면 구상 보건진료소	순천시 서면 수통목길 3	구상리, 홍대리 일원
순천시 서면 판교 보건진료소	순천시 서면 판교안길 164-1	판교리, 청소리 일원
순천시 황전면 회덕 보건진료소	순천시 황전면 삼재팔동길 391	회룡리, 덕림리, 모전리 일원
순천시 황전면 평죽 보건진료소	순천시 황전면 농소길 9	평촌리, 죽청리 일원
순천시 황전면 비촌 보건진료소	순천시 황전면 비촌1길 83	비촌리 일원
순천시 월등면 망룡 보건진료소	순천시 월등면 복사골길 116	망룡리, 계월리, 월림리 일원
순천시 월등면 신월 보건진료소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360	신월리, 윤월리 일원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생태환경센터	순천시 이수로 13(장천동)
맑은물관리센터	순천시 강변로 77(교량동)
순천만관리센터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오천동)
낙안읍성관리사업소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문화예술회관	순천시 삼산로 16(석현동)
체육시설관리소<삭제>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삭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 ② 시민주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접민주주의 정책 추진 2. 시민참여 업무 3. 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③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u>3. 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u> 4. ~ 10. (생략) <u>11. 시정 주요업무 평가</u> <u>12. 인구정책 발굴, 민간연계 협력</u> 13. (생략) 〈신설〉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u>일류도시기획단을 두고</u> ----- ----- ----- ② <u>일류도시기획단장은</u> ----- 1. 융복합 메가 프로젝트 추진(광역자원 화시설 건립, 예술의 전당 건립 등) 2. 시 중장기 발전계획(2050미래계획) 총괄 3. 시 역점사업 발굴 ③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 9. (현행 제4호에서 제10호와 같음) 〈삭제〉 〈삭제〉 12. (현행 제13호와 같음) <u>13.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관한 사항</u>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시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u>분장하기</u> 위하여 <u>행정안전국, 미래산업국,</u> ----- ----- <u>도시디자인국</u> -----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혁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전반 사무 및 공인 관리 2. 직원 복무지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제5조(<u>행정안전국에 두는 과</u>) ① <u>행정안전국에</u> 총무과, <u>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u>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u>신청사건립과</u> 를 둔다. ② <u>행정안전국장</u> ----- 1. 시 전반 사무 및 공인 관리 2. 직원 복무지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현행	개정안
3. 대·내외 의식 및 행사 지원	3. 대·내외 의식 및 행사 지원
4.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 관리	4.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 관리
5. 공무원 임면, 징계, 교육, 표창	5. 시정자료 수집, 보존, 활용
6. 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 관리	6.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7. 국·내외 자매결연, 남북교류 업무	7. 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 관리
8. 공무 국외여행, 서울사무소 운영	8. 공무원 교육 및 상시학습 관리
9. 공무직 인사, 단체교섭, 노동조합 업무	9. 시정 주요업무 평가
10. 시정자료 수집, 보존, 활용	10. 공무직 인사, 단체교섭, 노동조합 업무
11.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	11. 국·내외 자매결연, 남북교류 업무
12. 읍면동 예산 관리 운영, 행정지도	12. 공무국외여행, 서울사무소 운영
13. <삭제 2020.12.15>	13.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
14.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14. 읍면동 예산 관리 운영, 행정지도
15. 사회혁신 업무 총괄, 이행과제 발굴	15.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16. 자원봉사 지원	16.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17. 지방세 세입 결산 총괄	17. 시민참여 업무
18. 지방세 부과, 감액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 지원
19. 개별주택가격 및 특성조사	19. 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20.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세무조사	20. 지역안전관리계획, 안전문화운동 추진
21.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 부과	21. 재해대책본부 구성·운영
22. 시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22. 중대재해 예방계획·지도·점검
23.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관리	23. 사회재난관리 총괄·조정
24. 체납세 징수, 체납자 관리	24. 자연재난 대응, 예방대책, 피해복구
25. 세외수입 세원 발굴, 부과징수, 수납	25.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회안전망 구축
26.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공매처분	26. 민방위 비상대비 계획수립, 편성·교육
27.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결산	27. 지방세 세입 결산 총괄
28.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공급계약	28. 지방세 부과, 감액에 관한 사항
29. 자금운용·배정, 복식부기 등 재정관리	29. 개별주택가격 및 특성조사
30. 공유재산 관리·보존, 대부, 유지 관리	30.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세무조사
31. 본청·읍면동 신축, 증축, 개보수, 유지	31.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 부과

현행	개정안
32.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33. 지역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34. 공공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업무 추진 35.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36. 전산 및 행정정보화, 홈페이지 관리 37.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32. 시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33.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관리 34. 체납세 징수, 체납자 관리 35. 세외수입 세원 발굴, 부과징수, 수납 36.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공매처분 37.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결산 38.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공급계약 39. 자금운용·배정, 복식부기 등 재정관리 40. 공유재산 관리·보존, 대부, 유지 관리 41. 본청·읍면동 신축, 증축, 개보수, 유지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미래산업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총괄, 취업 상담·알선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3.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업무 4. 산업·농공단지 입주, 경쟁력강화 사업 5. 청년정책 총괄, 청년 참여 확대 6. 지역 노·사·민·정 협력, 노사쟁의 조정 7.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8. 소상공인 지원 업무 전반 9.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0. 전기, 가스, 석유 등 지역에너지 관리 11. 전통시장 육성발전, 시설현대화, 관리 12.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13. 도새재생 전략계획 수립, 뉴딜사업 공모 14.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15. 도시재생 연관시설 조성, 사후관리	제6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u>미래산업국에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경제진흥과, 기후에너지과, 디지털정책과</u> -----. ② <u>미래산업국장</u> -----. 1. 청년정책 및 일자리 총괄 2. 청년활동 지원 전반 3. 순천 미래산업·신성장 동력사업 개발 4. 초경량 마그네슘 육성 사업 5.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6. 산업·농공단지 개발, 입주, 조성 7.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업무 8. 잡월드 운영, 전시, 홍보, 수익사업, 시설관리 9.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10. 소상공인 지원 업무 전반 11.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12. 전통시장 육성발전, 시설현대화, 관리 13. 지역 노·사·민·정 협력, 노사쟁의 조정 14. 기후정의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15.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행	개정안
16. 순천 미래산업·신성장 동력사업 개발 17. 초경량 마그네슘 육성 사업 18. 잡월드 운영, 전시, 홍보, 수익사업 19. 잡월드 시공 전반, 건축 감독	16.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전기, 가스, 석유 등 지역에너지 관리 18.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20.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환경정책 추진 21.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22. 공공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업무 추진 23. 디지털 정책 및 산업 육성 24.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25. 메타버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6. 지역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7.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28. 전산 및 행정정보화, 홈페이지 관리 29.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제7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평생교육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교류 추진 2. 문화예술 행사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3.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화지역 조성 4. 문화재 보수·문화재 공원화 사업 5. 문화재 지정, 활용사업, 세계유산 관리 6. 박물관 전시·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7.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총괄, 관리 8.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제7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u>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u> 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도시정책 추진 및 지정, 문화특화지역조성 2.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교류 추진 3. 문화예술 행사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문화재정책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보수·문화재 공원화 사업 6. 문화재 지정, 활용사업, 세계유산 관리 7. 기독교박물관 전시·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8.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9.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10. 교육도시 육성, 교육여건 개선 11.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대학 지원 12.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 13. 여성문화대학 운영, 프로그램 개발 14. 관광진흥 종합기획, 마이스산업 육성 15. 국내·외 관광홍보, 순천 대표축제 추진 16. 관광시설 및 휴양자원 인프라 구축 17. 체험관광 운영 및 수학여행단 유치 18. 관광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운영·점검 19. 미식관광 브랜드화, 프로그램 개발 20.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21. 생활체육 육성, 체육단체 지원·관리 22. 스포츠산업 진흥, 체육행사 개최 23. 체육시설 확충, 소규모 시설 지원 24. 도서관 운영지원, 독서정책 개발 25. 작은도서관 신설, 프로그램 운영 2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10. 관광진흥 종합기획, 마이스산업 육성 11. 국내·외 관광홍보, 순천 대표축제 추진 12. 관광시설 및 휴양자원 인프라 구축 13. 체험관광 운영 및 수학여행단 유치 14. 관광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운영·점검 15.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16.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17.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18. 교육도시 육성, 교육여건 개선 19. 대학 상생 및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20.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사업 지원 21. 청소년 정책 추진, 청소년 단체 지원 22.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23. 문화건강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운영지원, 독서정책 개발 25. 작은도서관 신설, 프로그램 운영 2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27. 생활체육 육성, 체육단체 지원·관리 28. 스포츠산업 진흥, 체육행사 개최·유치 29. 체육시설 확충, 소규모 시설 지원 30.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1. 체육 및 교양지도에 관한 사항 32.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3. 공공체육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노인복지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8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u>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u> ----- -----

현행	개정안
② <u>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 노인복지 시책 2.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 단체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설치, 복지시설 운영·지원 4. 노인복지관 등 운영·관리 5.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민원업무 제도개선 6. 개발행위(농지, 토지, 산지 등) 허가 및 협의 7.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8.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협의, 용도변경 9. 환경배출시설 허가, 신고 및 준공처리 10. 위생업소 허가, 신고 및 위생교육 실시 11. 가족관계등록 사무, 제적부 관리 보관 12. 이동민원실 관리·운영 1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 14.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행사 운영 15.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추진 16.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업무 추진 17. 장묘문화 개선, 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 18. 생애주기별 보편적복지 시책 추진 19. 다문화, 건강가정, 한부모가족 지원 20. 여성정책 개발, 여성단체 지원 21. 공동모금회, 긴급복지,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22. 아동친화 업무, 지역아동센터 지원 23. 어린이집 관리, 보육업무 지원 24. 청소년 정책 추진, 청소년 단체 지원 25.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 아동 서비스 제공 26.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운영 27.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② <u>시민복지국장</u> -----. 1. 지역 복지정책 수립 및 총괄 2. 생애주기별 복지 시책 추진 3. 공동모금회, 긴급복지,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4. 사회복지시설 설치, 복지시설 운영·지원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 6.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행사 운영 7.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추진 8.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업무 추진 9. 장묘문화 개선, 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 10.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 노인복지 시책 11. 노인복지관 등 운영·관리 12. 어린이집 관리, 보육업무 지원 13.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추진 14.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5.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 아동 서비스 제공 16. 지역아동센터 지원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8. 다문화, 건강가정, 한부모가족 지원 19. 여성정책 개발, 여성단체 지원 20.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총괄 21.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 단체 관리 22. 여성문화대학 운영, 프로그램 개발 23.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민원업무 제도개선 24. 개발행위(농지, 토지, 산지 등) 허가 및 협의 2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6.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협의, 용도변경 27. 가족관계등록 사무, 제적부 관리 보관 28. 이동민원실 관리·운영

현행	개정안
28. 지적관리, 지적측량, 토지이동 업무 29. 도로명주소 관리·운영 30.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31. 지적재조사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공공시설과, 교통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안전관리계획, 안전문화운동 추진 2. 재해대책본부 구성·운영 3. 사회재난관리 총괄·조정 4. 자연재난 대응, 예방대책, 피해복구 5.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회안전망 구축 6. 민방위 비상대비 계획수립, 편성·교육 7.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8. 도시개발, 산업(농공)단지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9. 공영개발, 택지개발지구 조성·관리 10.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11. 국유재산 관리 및 건설분야 편입토지 보상 12.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 수자원 계획, 조사, 관리, 이용사업 추진 14.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15. 도심 침수예방시설(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 16. 주택건설계획 수립	29.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30. 지적관리, 지적측량, 토지이동 업무 31. 도로명주소 관리·운영 32.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33. 지적재조사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 제9조(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 ① 도시디자인국에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시공간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디자인국장 -----. 1. 도시정책 수립 및 총괄 2.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3. 도시개발 불법행위 단속 4. 공영개발, 택지개발지구 조성·관리 5.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6.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 교통 이동망 조성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8. 대중교통 정책 개발, 교통영향평가 9.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10.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무인공영 자전거 운영 11.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인허가 및 취소 12.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 14.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조사 및 처리 15.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6. 주차장 조성·관리 17.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8. 자동차 등록, 변경, 말소 등 사무 전반

현행	개정안
17.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장감독 18.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관리대장 작성·관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심의, 건축디자인심의 20.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총괄 계획 및 지침 수립 21.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22.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3. 도로개설사업 설계·감독 24. 도로 정비·유지관리, 생활민원 처리 25. 구조물(교량·육교·지하차도 등) 관리 26.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무인공영 자전거 운영 27.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28. 공공건축물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인허가 및 취소 30.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31.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 32.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조사 및 처리 33.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4.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35.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조성·관리 36. 자동차 등록, 변경, 말소 등 사무 전반	19. 원도심 공간 혁신에 관한 사항 2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뉴딜사업 공모 21.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22. 도시재생 연관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국유재산 관리 및 건설분야 편입토지 보상 25.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6. 수자원 계획, 조사, 관리, 이용사업 추진 27.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28. 도심 침수예방시설(배수펌프장, 우수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 29.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총괄 계획 및 지침 수립 30. 주택건설계획 수립 31.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장감독 32.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3.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3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관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심의, 건축디자인심의 35.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36.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37. 도로개설사업 설계·감독 38. 도로 정비·유지관리, 생활민원 처리 39. 구조물(교량·육교·지하차도 등) 관리 40. 도시녹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1. 도시숲 조성 및 관리 42. 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43.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관리

현행	개정안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u>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u> ,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7조(소관사무) (생략)	제1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농정업무의 기획·조정 2. 농촌 발전계획 수립 3. 농업 유관기관 및 단체 관리 4.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5.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6. 도시농업 육성, 지원, 교육훈련 7. 농촌자원 분야 발굴, 개발 8. 농촌관광 및 농촌 휴양자원 개발·추진 9. 농촌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0.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11. 농업인 인력육성·지도 12.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직불금 지원 13. 채소·원예 육성사업, 기반조성 14. 과수·특작 육성·지원 15. 매실산업 육성, 생산기반 확충 16. 농산물 유통·판촉, 양곡관리 업무 17. 로컬푸드 육성, 직매장·직거래장터 운영 18. 농산물 가공·수출 육성, 가공센터 관리 19. 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 무상급식) 추진 20. 도매시장 운영, 도매시장 법인 관리 21. 축산단지 조성, 축산농가 경영상담·기술보급, 축산시설 현대화 22. 반려산업 육성, 반려동물 시설 조성 23.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	1. 농정업무의 기획·조정 2. 농촌 발전계획 수립 3. 농업 유관기관 및 단체 관리 4. 스마트팜 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분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7.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8. 농촌자원 분야 발굴, 개발 9. 농촌관광 및 농촌 휴양자원 개발·추진 10. 농촌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1.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12. 농업인 인력육성·지도 13.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직불금 지원 14. 채소·원예 육성사업, 기반조성 15. 과수·특작 육성·지원 16. 매실산업 육성, 생산기반 확충 17.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업무 18. 농산물 유통·판촉, 양곡관리 업무 19. 푸드플랜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0. 로컬푸드 육성, 직매장·직거래장터 운영 21. 지역 대표미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가공·수출 육성, 가공센터 관리 23. 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 무상급식) 추진 24. 도매시장 운영, 도매시장 법인 관리

현행	개정안
24. 가축 방역, 가축 위생 업무 25. 야생동물 보호·관리, 야생동물센터 운영 26. 농업 기술 개발, 과수·특용작물·축산 사양관리 등 기술 보급 27. 벼, 식량작물 등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28. 종합검정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29.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업무 30. 지역특화작목 개발, 화훼 재배기술 보급	25. 축산단지 조성, 축산농가 경영상담·기술보급, 축산시설 현대화 26. 반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반려동물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 29. 가축 방역,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 30. 야생동물 보호·관리, 야생동물센터 운영 31. 농업 기술 개발, 과수·특용작물·축산 사양관리 등 기술 보급 32. 벼, 식량작물 등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33. 종합검정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34. 지역특화작목 개발, 화훼 재배기술 보급 35. 도시농업 육성, 지원, 교육훈련 36. 경관농업 활성화 37. 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환경센터	1. 생태환경센터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약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약
나.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노사협의회 운영	나.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노사협의회 운영
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 지도·단속	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 지도·단속
라. 재활용품 수집·운반·판매	라. 재활용품 수집·운반·판매, 업사이클 센터 운영
마. 신규 매립장 조성, 폐기물매립·자원화 업무협약	마. 신규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폐기물 매립·자원화 업무협약
바.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바.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사.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운영	사.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운영
아. 업사이클센터 운영·교육·홍보	아.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행	개정안
자.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카.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환경정책 추진 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파. 생활환경 민원 처리 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수질개선 사업 실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너. 산지자원화,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더. 산불보호, 산림재해방지 등 산림보호 추진 러. 산림복지단지, 산림특화작목 육성 머. 도립공원 탐방로, 시설물 설치·유지 버.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서. 도시녹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어.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저. 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처.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관리 3. 순천만관리센터 가.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나.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 축제 추진 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전반 라. 국제습지센터 관리·운영 마. 순천만국가정원 수익사업 기획·추진 바.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판매·정산, 식음시설·영업시설 운영 사. 순천만국가정원 기반시설 관리 아. 순천만국가정원 수목·잔디 식재 및 관리	자. 환경배출시설 허가, 신고 및 준공처리 차. 생활환경 민원 처리 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수질개선사업 실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타. 산지자원화,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파. 산불보호, 산림재해방지 등 산림보호 추진 하. 산림복지단지, 산림특화작목 육성 거. 도립공원 탐방로, 시설물 설치·유지 너.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3. 순천만관리센터 가. 도시 정원정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나.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전반 라.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 축제 추진 마.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관리·운영 바. 순천만국가정원 수익사업 기획·추진 사.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판매·정산, 식음시설·영업시설 운영 아. 스카이큐브 운영 전반

현행	개정안
자.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연출 및 생산 차. 정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카. 정원산업벨트 조성, 조정·화훼산업 육성 타. 정원용 식물 연구, 정원소재 개발, 정원산업 컨설팅 등 정원의원센터 운영 파. 한평정원페스티벌 등 정원문화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하. 가든스쿨, 시민정원사 등 정원교육 추진 거. 순천만습지 보전·운영 종합계획 수립, 국제적 습지 네트워크 조성 너. 순천만습지 생태체험프로그램 추진 더. 순천만습지 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러. 해양지도, 생태체험선 운항·관리 머. 해양수산진흥, 어촌 6차산업 추진, 어촌인력양강화, 양식어장 관리 버. 순천만 갯벌복원, 생태계 조사 및 연구 4.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가. 낙안읍성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읍성 사적의 조사·연구 및 관광객 안내 다. 유물정비 복원사업 및 보존관리 5. 문화예술회관 가. ~ 다. (생략)	자. 순천만국가정원 기반시설 관리 차. 순천만국가정원 수목·잔디 식재 및 관리 카.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연출 및 생산 타. 정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파. 정원후방산업 육성 하. 정원산업벨트 조성, 조정·화훼산업 육성 거. 정원용 식물 연구, 정원소재 개발, 정원산업 컨설팅 등 정원의원센터 운영 너. 한평정원페스티벌 등 정원문화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더. 가든스쿨, 시민정원사 등 정원교육 추진 러. 습지 보전·운영 등 총괄에 관한 사항 머. 순천만습지 보전·운영 종합계획 수립, 국제적 습지 네트워크 조성 버. 순천만습지 생태체험프로그램 추진 서. 순천만습지 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어. 해양지도, 생태체험선 운항·관리 저. 해양수산진흥, 어촌 6차산업 추진, 어촌인력양강화, 양식어장 관리 쳐. 순천만 갯벌복원, 생태계 조사 및 연구 4.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가. 낙안읍성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읍성 사적의 조사·연구 및 관광객 안내 다. 유물정비 복원사업 및 보존관리 라. 뿌리깊은박물관 운영 및 관리 5.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체육시설관리소 가.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체육 및 교양지도에 관한 사항 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공공체육시설물 운영에 관한사항 [별표 1] 보건소·<u>보건지소</u>·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tr><td>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td><td>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0</td><td>-----</td></tr><tr><td>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td><td>순천시 송광면 후곡안길 97</td><td>-----</td></tr></table>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table><tr><th>사업소명</th><th>위치</th></tr><tr><td>생태환경센터</td><td>순천시 이수로 13(장천동)</td></tr><tr><td>맑은물관리센터</td><td>순천시 강변로 77(교량동)</td></tr><tr><td>순천만관리센터</td><td>순천시 남송릉로 66(오천동)</td></tr><tr><td>낙안읍성지원사업소</td><td>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td></tr><tr><td>문화예술회관</td><td>순천시 삼산로 16(석현동)</td></tr><tr><td>체육시설관리소</td><td>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td></tr></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0	-----	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	순천시 송광면 후곡안길 97	-----	사업소명	위치	생태환경센터	순천시 이수로 13(장천동)	맑은물관리센터	순천시 강변로 77(교량동)	순천만관리센터	순천시 남송릉로 66(오천동)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문화예술회관	순천시 삼산로 16(석현동)	체육시설관리소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보건소·<u>보건지소</u>·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tr><td>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td><td>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td><td>-----</td></tr><tr><td>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td><td>순천시 송광면 모후실2길 2</td><td>-----</td></tr></table>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table><tr><th>사업소명</th><th>위치</th></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오천동)</td></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삭 제></td><td><삭 제></td></tr></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	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	순천시 송광면 모후실2길 2	-----	사업소명	위치	-----	-----	-----	-----	-----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오천동)	-----	-----	-----	-----	<삭 제>	<삭 제>
명칭	위치	관할구역																																													
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0	-----																																													
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	순천시 송광면 후곡안길 97	-----																																													
사업소명	위치																																														
생태환경센터	순천시 이수로 13(장천동)																																														
맑은물관리센터	순천시 강변로 77(교량동)																																														
순천만관리센터	순천시 남송릉로 66(오천동)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문화예술회관	순천시 삼산로 16(석현동)																																														
체육시설관리소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																																														
명칭	위치	관할구역																																													
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																																													
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	순천시 송광면 모후실2길 2	-----																																													
사업소명	위치																																														
-----	-----																																														
-----	-----																																														
-----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오천동)																																														
-----	-----																																														
-----	-----																																														
<삭 제>	<삭 제>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1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조직개편)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정부방침)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방침

2. 주요내용

- (총 정원) 1,623명 → 1,623명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3	1,623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83	1,583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2)	3	8	10(-2)	24
6급 이하 계	1,489	1,489				
지도관	2			2		
연구관	1				1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제14조(예고의 예외) 예고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3. 사업소·출장소 등의 설치조례, 정원조례, 직제규칙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27.(가족보육과-2556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31.(기획예산실-154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3	1,623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83	1,583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6급 이하 계	1,489	1,489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3	1,623					총 계	1,623	1,623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83	1,583					일반직 계	1,583	1,583				
3급	1	1					3급	1	1				
4급	11	5	1	2	3		4급	11	5	1	2	3	
5급	82	35	3	8	12	24	5급	82	<u>37</u>	3	8	<u>10</u>	24
6급 이하 계	1,489	1,489					6급 이하 계	1,489	1,489				
별정직 계	3	3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지도사	27	27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81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9. 15. ~ 10.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7.(가족보육과-2160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5.(기획예산실-1216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9. 15.(순천시 공고 제2022-2114호)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순천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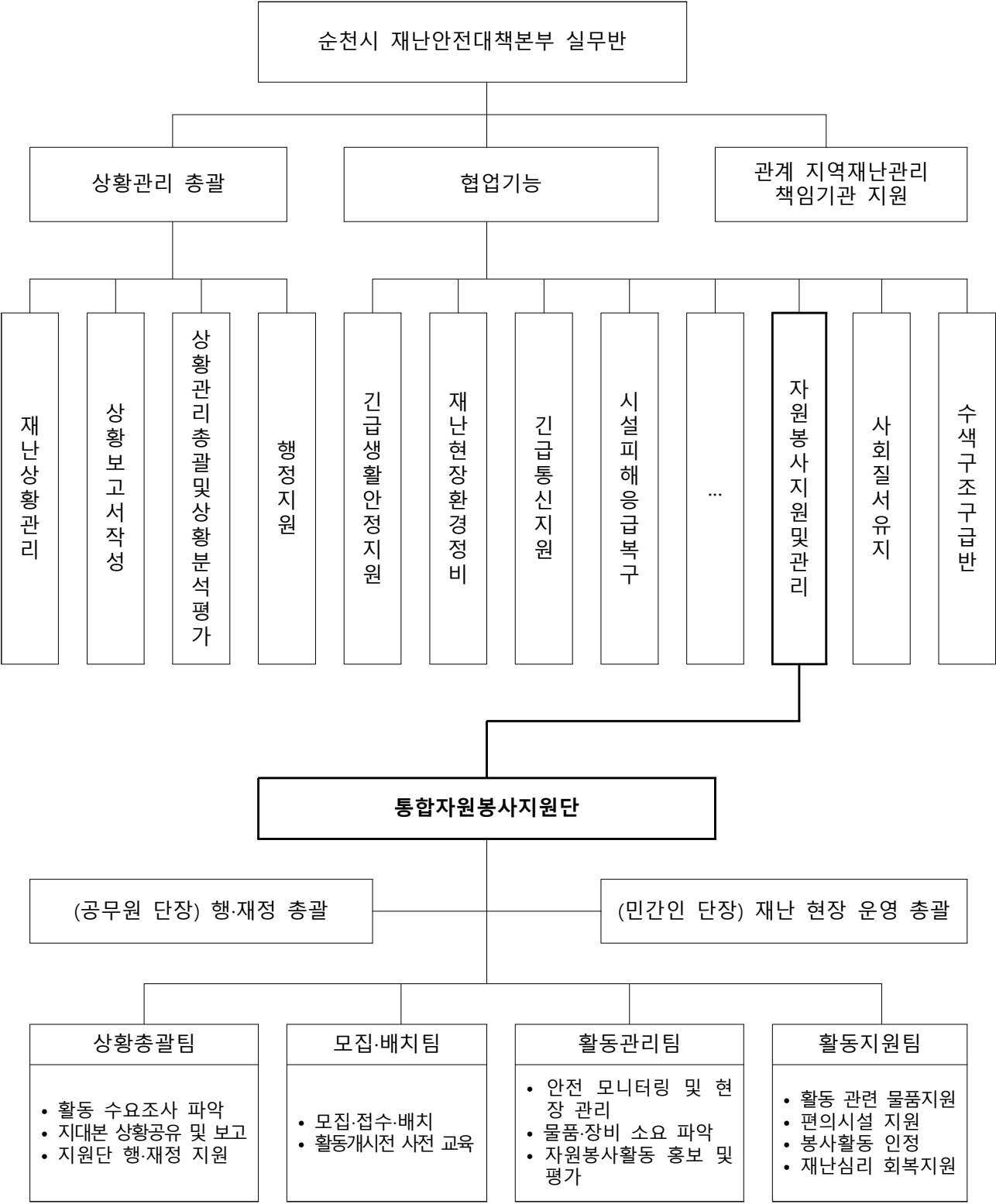
홍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
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구분		직위	담당 사무
단장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행·재정)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 재난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단체 간 역할 조정 ▶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재난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지원
실 무 팀	상 황 총 괄 팀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 팀장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사항 발굴 및 지원
	모 집 배 치 팀	자원봉사센터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 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 실시
	활 동 관 리 팀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홍보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기록 등)
	활 동 지 원 팀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재난심리 회복지원

비 고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 재난 규모에 따라 일부 팀 추가 편제 구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자치혁신과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749-5453)
 자치지원팀장 박희숙(☎ 749-589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요청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2. 행정안전부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19. 12. 3. 공포, '20. 6. 4. 시행)하였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보내드리니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 담당 부서 주관, 재난 담당(지대본, 통지본 조례 담당) 부서 협조
4.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 계획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부.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 계획 1부. 끝.

○○시/군/구**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OO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OO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O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

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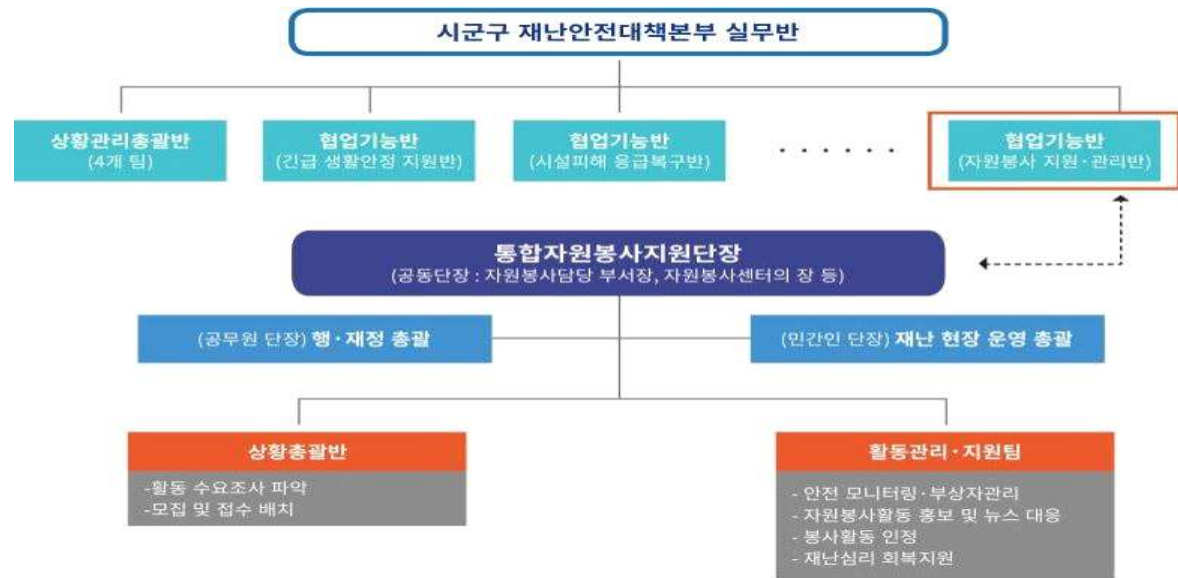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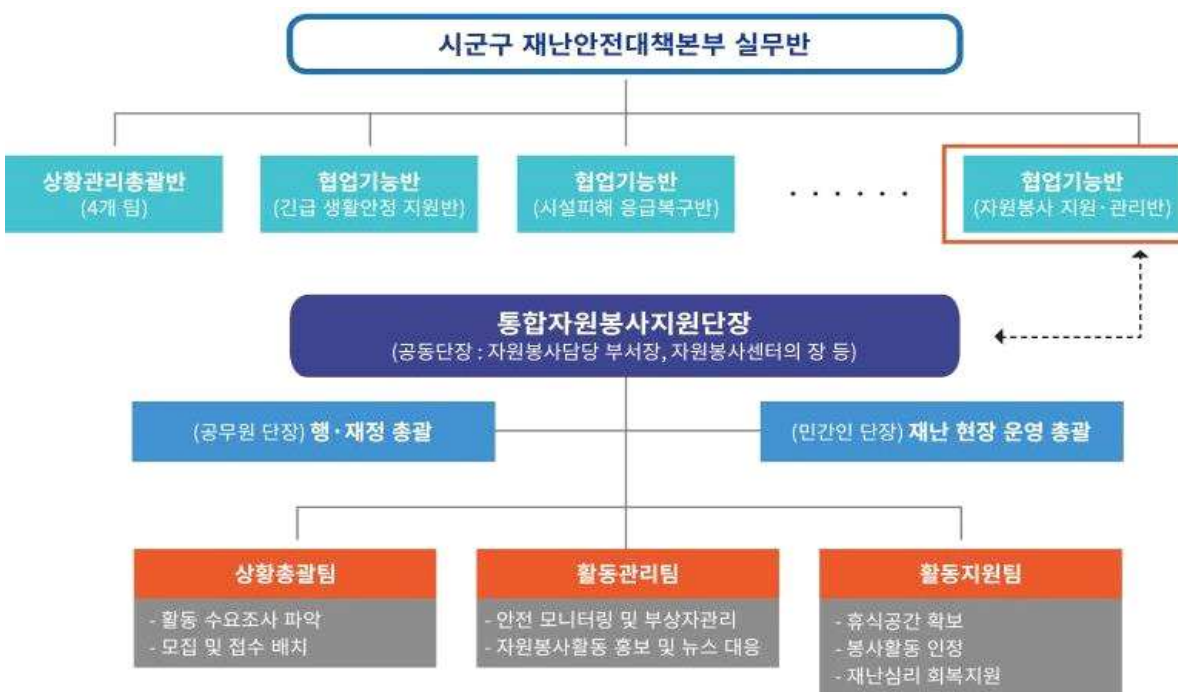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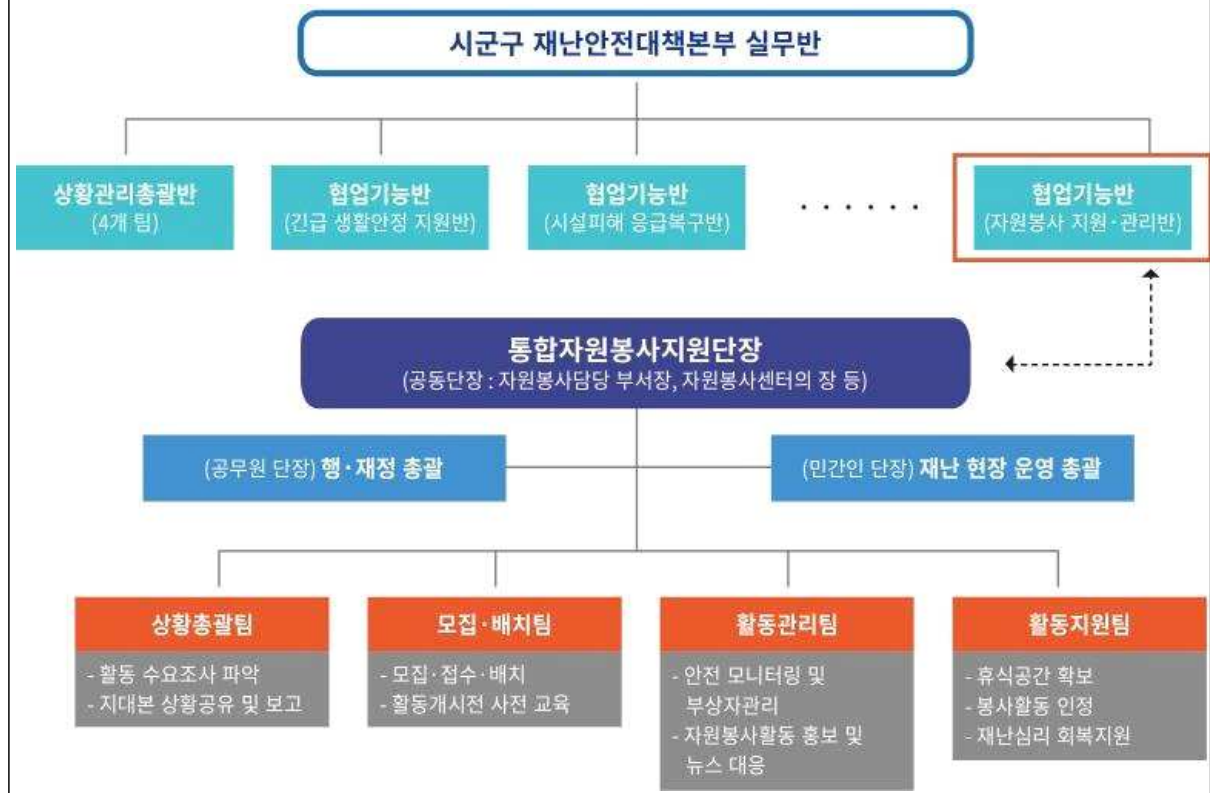
◆ 2개 팀 조직(예시)



◆ 3개 팀 조직(예시)



◆ 4개 팀 조직(예시)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예시 >

팀명(예시)	직위	담당 사무
단장	공무원 (00시 자치행정과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민간인 (00시 자원봉사센터장)	
상황총괄팀	00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름: 000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00시 자치행정과 계장 이름: 000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00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이름: 000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00시 자원봉사센터 팀원 이름: 000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00시 00민간단체 이름: 000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00시 00민간단체 팀원 이름: 000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 고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 계획

I 추진 목적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 조직 구성 및 단위 직무 분장, 운영절차 마련 등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설치·가동 태세 완비
 - ※ 지원단 가동: 태풍 콩레이('19. 8.),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19. 4.)
- 지원단(자원봉사 담당 부서)과 재난부서간 협력 체계 마련, 교육·훈련을 통한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활동 역량 제고

II 추진 현황

-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 협업을 위한 역할 분담(민간협력과, '19. 6.14.)

구분	재난자원관리과(주관부서)	민간협력과(지원부서)
기능	- 재난 관련 자원봉사활동 지원 총괄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원봉사 법제도 총괄 및 재난시 협력 *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재난 대응	- 중대본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운용 - 재난현장(중수단)에 지원단 파견 - 지자체 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수급 조정 및 홍보 총괄, 상황보고 작성 총괄	- 직원 파견(자원과 지원 요청 시) - 재난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업무 지원
대외 협력	- 국토부(철도 운임 및 통행료 면제) 등 관계기관 관련 대외 협력 총괄 - 자원봉사단체 대상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자원봉사활동 관련 협력 관계 구축	자원봉사단체에 재난 대응 관련 협조 기반 마련·지원
교육	- 자원봉사활동 조정·관리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교육 및 훈련 - (대상) 자원봉사 담당자, 자원봉사센터 직원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교육 - (대상) 개별 자원봉사자

- 지원단 운영매뉴얼 전면 개정 및 설명회 개최('19.10.11.~11.1.)
 - * 5개 권역별(중부, 호남, 영남, 경기, 강원), 총432명
- 지자체별 지원단 구성(안) 제출, 검토·보완 요구('19. 12. 9.~'20.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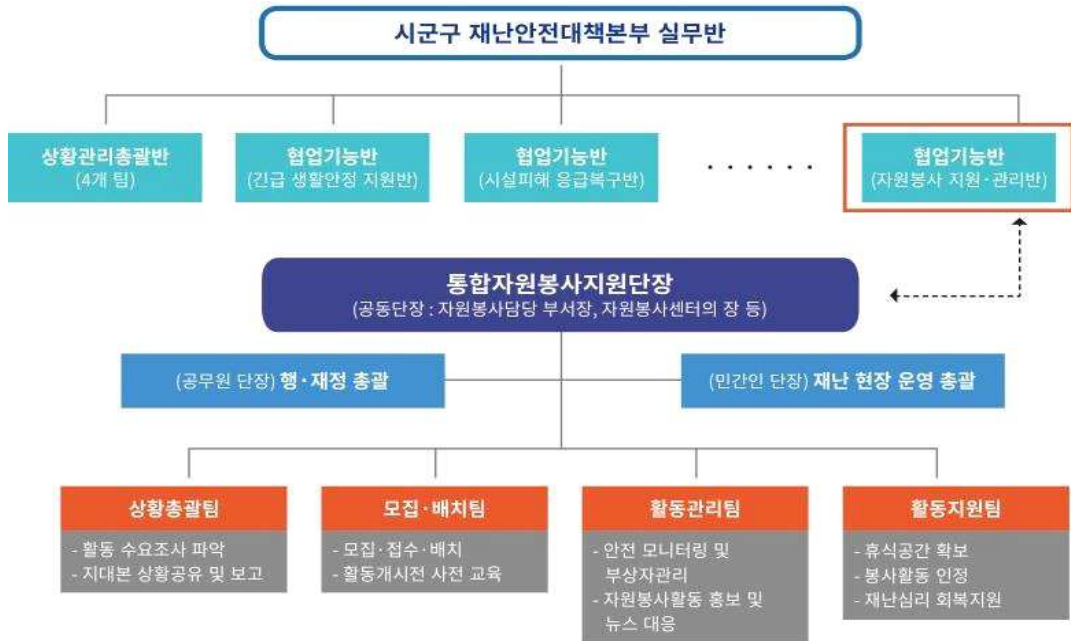
Ⅲ 추진내용

① 지자체 지원단 조직 정비

○ (단기) 지자체별 지원단 구성 및 발족('20. 2.)

- 단장 위촉 및 표준편제에 따른 실무팀* 구성, 개인별 직무분담표 작성

*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단 전담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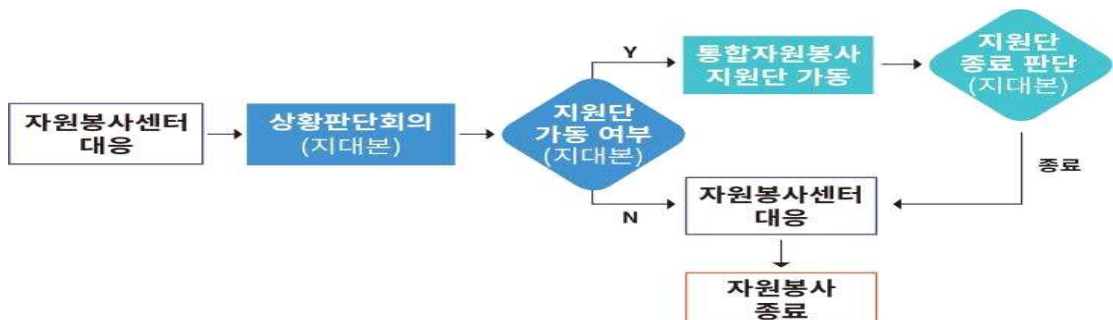
○ (중장기)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전담인력(1명) 확보·배치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배치·운영, 자원봉사자 재난대응 교육 등

* 소요예산: 지자체 보조 50%, 245명(3,556백만/ 급여, 4대보험료, 퇴직금 등)

②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원단 협력체계 구비

○ (가동 절차) 지대본 운영 상황판단회의 등 재난초기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석하여 지원단 가동여부 조기 판단



- **(상황 공유)** 지원단장이 지대본에 참여하여 재난상황 정보를 공유
 - * 「시군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7조 제2항 “시군구대책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해 재난발생 시 시군구지원단장을 상황판단회의 등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협력 체계)** 재난대응 관련 조례에 지원단 반영, 재난부서 담당자 대상 지원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협력 요청

- 지대본, 통지본 등 관련 조례에 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구분	조항	개정방향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지대본 상황판단회의 구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포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자원봉사활동 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관련 내용 추가

- 지대본 담당자 워크숍(대응정책과), 지자체 복구 담당자 워크숍(복구지원과, 재해구호과), 자원봉사 담당자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 지원단 역할 및 활용사례,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활동경비 예산 지원 방법(재해구호기금, 재난구호지원비 집행 가능 등)

③ 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

- 지원단 종사자에 대한 재난교육 의무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대상: 지자체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전국 약 1,300명)

- 재난현장 사례 중심 교육 확대 실시

- (공무원) 민방위교육원에 교육과정 신설,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민간인) 시·도 교육장소 활용,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구분	2019년	2020년	교육 내용
시간	13시간 (1박2일, 숙박: 1일)	19시간 (2박3일, 비숙박)	• 재난의 개념, 재난위험관리와 마을단위 복원력(추가) • 현장조사 및 자원봉사활동 조정(추가) • 국가 재난관리체계 및 구호 체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매뉴얼 •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회당 인원	100명 내외	30명 내외	
수행 방식	직접 실시	위탁교육	

※ 관리자/실무자 과정, 보수교육 등 대상자별 교육 내용 일부 조정, 60백만원

④ 재난 대비 지원단 설치·운영 훈련

- (자체 도상훈련) 대규모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등 운영매뉴얼 이행 연습(불시훈련)
- (재난합동 실제훈련)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실제 현장에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 등
 - ※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
- (역할극 훈련) 재난에 따른 피해상황을 주고 그룹*을 나눠 그룹별 역할에 따른 임무를 부여, 다양한 제약**과 혼란 상황***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조정 실시(대상: 지원단 단장 중 희망자 약 60명)
 -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민간단체A, 민간단체B, 이재민, 언론 등
 - ** 그룹 간 소통 금지, 특정 그룹만 현장에 접근 가능 등
 - *** 시간별 돌발 상황 및 그룹별 다른 정보 부여 등



IV 추진 계획

- 지원단 표준조례안 배포(3월) 및 설명회(미정)
- 민방위교육원에 교육 과정 운영(분기별 1회)
 -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요청 및 개발 추진(7월)
- '20년 재난대비 지원단 설치·운영 훈련(10월)
 - ※ 훈련계획 수립(미정), 도상훈련(미정), 안전한국훈련(10월), 역할극(11월)
- '20년 지원단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5~11월)
 - ※ 교육계획 수립(1월), 계약(4월), 교재개발 등 교육 준비(4월)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1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자 범위를 재가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지원기준 및 대리수령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신청)”으로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자는 제외한다” 규정 삭제
- 제3조의 제2항 “건강바우처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규정 신설
- 제4조 지원기준을 “계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자”로 구분하여 규정
- 제7조 “건강바우처 대리수령자 범위”를 “배우자, 민법 제768조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명확히 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7. ~ 11. 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28.(가족보육과-230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6.(기획예산실-1393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7.(순천시 공고 제2022-2279호)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 을 “(지원대상 및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 를 “입소자” 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바우처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반기별로 지급한다” 를 “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 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로, “소급하여 지급하되, 건강바우처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 를 “지급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가족이” 를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u>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는 제외한다.</u>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 ----- ----- ----- --. ----- ----- ----- <u>입소자</u> ----- ----- ----- -----.
<신 설>	② <u>건강바우처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u>
제4조(지원기준) ① (생략)	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u>반기별로 지급한다.</u>	② ----- ----- <u>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 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u>
③ <u>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건강바우처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u>	③ <u>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u> ----- <u>지급한다.</u>

④ (생략)

제7조(수령) ① (생략)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가족이 수령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2. (생략)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경우

4. 5.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중지)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비용추계서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 제외규정 삭제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와 순천시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건강바우처 지원 : 1인 월 10,000원(연 120,000원)
 - 건강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업체 수수료 지원 : 바우처 사용금액의 2%
- 순천시 재가급여 이용자 : 4,040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9월)
 - 만 8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 : 약 2,600여 명 (65% 추정)
- 2022년 사업 추진 현황
 - 바우처카드 신청 및 사용 현황

(단위 : 명)

바우처 신청대상	바우처카드 발급	바우처카드 사용	비고
9,000	8,476 (94%)	8,036(94%)	2022. 9. 기준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총예산	지출			비고
	계	바우처 사용액	운영업체 수수료 등	
933,000	617,255 (66%)	605,153	12,102	2022. 9.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591,20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591,20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시비	1,591,20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3년 ~

○ 산출액 : 연 318,240천원

○ 산출근거 (세출 순증가액)

▪ 건강바우처 지원 : 10,000원×12개월×2,600명 = 312,000천원

▪ 건강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업체 수수료 : 312,000,000원×2% = 6,24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과장 김종남 (☎ 749-6166)

팀장 채숙희 (☎ 749-6289)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1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근거 조항 「주택법」 제43조 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변경
- 상위 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3조 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의한” → “따른”)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7. ~ 11. 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13.(가족보육과-2423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14.(기획예산실-1448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7.(순천시 공고 제2022-2325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 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 자”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생활안정지원”을 “보호·지원”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따라 -----.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 -----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 자	2. ----- 따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3. ----- 보호·지원 -----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의 규정에 <u>의한</u> 북한이탈 주 민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u>의한</u>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5. ----- ----- ----- <u>따른</u> ----- -- 제4조(지원범위) ----- <u>따른</u>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5. 작성자

○ 사회복지과

과장

정 미(☎ 749-6180)

팀장

문동준(☎ 749-6260)

참고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2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도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명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4. ~ 11. 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14.(가족보육과-2439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12.(기획예산실-1421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4.(순천시 공고 제2022-2315호)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을 “2027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 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 <u>2027년 12월 31일</u>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사회복지과

과장

생활보장팀장

정 미(☎ 749-6180)

문동준(☎ 749-6260)

참고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령 제828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2. 11. 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05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의자 : 최미희 의원, 오행숙 의원,
이세은 의원, 이복남 의원,
최병배 의원, 우성원 의원,
김태훈 의원, 정관현 의원,
양동진 의원, 서선란 의원,
이향기 의원,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경영 지원(안 제4조~안 제6조)
- 라.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안 제7조~안 제8조)
- 마. 사업비의 보조(안 제9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별첨】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따라 사업 시행과 지원에 관한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최 미 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4-204-7423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복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4조))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5조)) 044-204-7543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제8조의3, 제12조)) 044-204-7494,
02-2124-324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9조~11조)) 044-204-7495, 02-2124-325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3조~20조)) 044-204-7547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2020. 12. 29.>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0. 2. 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본조신설 2015. 1. 28.]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27.	
2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2. 27.	
3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1. 12. 29.	
4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0. 7. 15.	
5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21. 12. 14.	
6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9. 12. 26.	
7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9. 19.	
8	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1. 9. 17.	
9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1. 10.	
10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2022. 3. 2.	
11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1. 4.	
1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1. 1.	
13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7.	
14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1. 11.	
15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7. 1.	
16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2. 4. 6.	
17	나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24.	
18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8.	
19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4.	
20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2022. 8. 19.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4. 1.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4. 29.	
23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4. 30.	
24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0. 11.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4. 20.	
26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2. 10. 11.	
2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12. 30.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4. 15.	
29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5. 17.	
30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8. 12.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6.	
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0.	
3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0. 1.	
34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1. 7. 29.	
35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7.	
36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9. 27.	
37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 11. 1.	
38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7.	
39	부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1. 6. 4.	
40	부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4. 15.	
4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28.	
4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8. 10.	
43	부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6. 16.	
4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2019. 9. 25.	
4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 13.	
46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7. 9.	
47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4. 5.	
48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15.	
49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31.	
50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1. 11.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7. 9.	
5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7. 16.	
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2. 17.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7. 8.	
55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1. 12.	
5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1. 12. 30.	
57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4. 5.	
58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1. 11. 15.	
59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1. 7. 8.	
60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10.	
61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2. 30.	
62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7.	
63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0.	
64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22.	
65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4. 9.	
66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1. 12. 30.	
67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5.	
68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4. 15.	
69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2. 10. 13.	
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27.	
71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2021. 7. 5.	
72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31.	
7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2019. 12. 30.	
74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0. 17.	
75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2. 31.	
76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20. 7. 10.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77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5. 24.	
78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1. 20.	
79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2021. 5. 14.	
80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1. 12. 22.	
81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2021. 12. 10.	
82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2020. 7. 13.	
83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10. 11.	
84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12. 24.	
85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10. 30.	
86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2. 30.	
87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8. 2.	
88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0.	
89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23.	
90	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8. 3.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81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제정이유

- 순천드라마촬영장과 연계하여, 지역 영화기반 시설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 인력 육성,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사업)
 - 시설·장비 대여 및 관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 제6조(사용료)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별표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 [별표 1] 사용료 및 감면사항
 - 사용료는 영화·드라마 시간당 500천원, 오락 프로·행사 시간당 600천원
 - 국가·순천시가 주최·주관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순천시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영상 관련 업체 및 관내 개인 창작자 : 50% 감면
 - 전라남도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영상 관련 업체 및 관내 개인 창작자 : 30% 감면
 - 순천드라마촬영장 오픈세트장 촬영 계획 시 : 30% 감면
 - 사용기간에 따른 감면 : 15%(7일 이상, 29일 이하), 30%(30일 이상)

○ 제8조(위탁운영)

-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영상문화 및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4. ~ 11. 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13.(가족보육과-2423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12.(기획예산실-142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4.(순천시 공고 제2022-2317호)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는 순천시 비례골길 24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촬영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촬영장, 연기자 대기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튜디오의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2. 스튜디오 시설·장비 대여
3. 영상물 촬영 유치 및 홍보
4. 영상물 촬영·제작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 관광 연계 상품 등 개발
7. 그 밖에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 허가) 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튜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용 료 및 감 면 사 항 (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 설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LED Wall 버추얼 스튜디오	드라마 / 영화	1시간	500,000	※ VAT 포함
	행사 / 오락 프로그램	1시간	600,000	※ VAT 포함
< 비 고 > ※ 최소 사용 신청시간은 일(日)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스튜디오 사용자는 회의실 및 연기자대기실 사용 가능 ※ 시장은 스튜디오 사용자에게 오퍼레이팅(작동), 촬영 배경소스 제공 시 기본 사용료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부과 가능				

2. 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시 설	감 면 사 유		감 면 율
LED Wall 버추얼 스튜디오	사용기간에 따른 감면	7일 이상, 29일 이하	15%
		30일 이상	30%
	- 국가·순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 (면제)
	- 순천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 상·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창 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50%
	- 전라남도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 상·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창 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30%
	- 순천드라마촬영장 오픈세트장 촬영 계획 시 (단, 오픈세트장 유료 촬영 일수 이내 감면)		
< 비 고 > ※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 적용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사업) :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비용추계의 전제

- 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관리비, 인건비, 시설·개발비 등
- 스튜디오 사용료(세입) 비용추계의 촬영일 수는 최근 3년간 순천 드라마촬영장 평균 촬영일 수(약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041,000	-176,000	-221,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세입(a)	540,000	0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세출(b)	1,581,000	176,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합 계	1,041,000	176,000	221,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시 비	1,041,000	176,000	221,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 관광과 관광시설운영팀 팀장 이수형(☎ 749-4541)

참고 1

관련 법령 등 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 12. 26.]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03.09>
-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31>
-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

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31>

- ④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31>
-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3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6.03.09>

[제목개정 2009.12.31.]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20조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

관내 시설 및 타 지자체 스튜디오 조례

1. 순천시 관내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6. 30.	문화예술과
2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6. 30.	미래산업과
3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7. 31.	문화예술과
4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021. 12. 22.	기술보급과

2. 타 지자체 실내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11. 1.	문화정책과
2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6. 25.	문화정책과
3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6. 4.	전략산업과
4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 12. 22.	관광진흥과

참고 3

국내 LED WALL 벚추열 스튜디오 현황

- 개념: 초고해상도의 실시간 배경을 통해 로케이션이 대체 가능한 스튜디오
- 스튜디오 현황

연 번	이름 (스튜디오)	주소 (구축년도)	면적	LED사이즈	비고
1	CJ ENM	경기도 파주 (22.05)	65,000평	20m 원형	- 에픽게임즈 제휴 스튜디오 구축 - 영화,드라마 제작 등 ICVFX특화
2	텍스터D1	경기도 파주 (21.10)	200평		- <더문>등 다수 촬영완료 - <만달로리안>vp솔루션 디자인사 협업
3	자이언츠스텝	서울 논현동 (20.12)		12m×4.7m	- LG전자 제휴하여 설치한 LED XR스튜디오
4	VA(모팩)	경기도 하남 (21.08)	총 3개동	360도 원형 (300평)	- 아시아 최대 규모 (3개동 추가 구축중) - <서울대작전> 등 다수 촬영완료 - (사용료)XR:25,000천원, 중형:35,000천원, 대형:55,000천원
5	XON	경기도 파주 (21.03)	약 600평	25m×5m	- 국내최초 LED기반 스튜디오 상업화 - <검은태양> 등 카체이싱 촬영 특화 - (사용료)8시간 15,000천원
6	VIVE(베타)	경기도 곤지암			- BTS 뮤직비디오 촬영 외 다수
7	LKS	서울 가산동 (21.04)	약 60평	9.5m×2.5m	- 단편영화<UE4>ICVFX 촬영 사례 있음 - 유튜브 촬영 등 다수 - -(사용료)1시간당 200천원
8	SBS A&T-IVEX	경기도 광명 (21.11)	1,300평	34m×7m	- 영상제작 관련 부대시설 완비 - 복합문화 건물 내 조성
9	더블베어스	경기도 고양	약 100평	12m×4m	- 웹<드림메이커>, MV 촬영 등 다수 - 곡면 LED타입 스튜디오 - (사용료)1시간당 500천원
10	베이직테크	경기도 파주 경기도 김포	300평		- LED 제조 및 설치, 렌트 전문업체 - EBS XR 우주대기획<더홈> 촬영 외 다수
11	NP XR Stage	경기도 김포 (21.03)	600평	24m×6m 커브형	- 격납고를 스튜디오로 활용 - AOMG XR콘서트, 글로벌 팬미팅 등 다수
12	삼성스튜디오	경기도 파주 (21.03)	2500평	이동식 LED월 운영	- 넷플릭스 장기 임대 스튜디오 - 필요에 따라LED설치하여 ICVFX활용
13	YSDSMC	경기도 연천 (21.03)	2000평	상동	- 상동
14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순천	70평		- 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 추진 - 구축완료 -(사용료)1시간당 500천원
15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예정)	부산			- 부산영상위원회 추진 사업 - BOLT와 연계한 LED월 구축 사업 진행중
16	YS C&S (예정)	경기도 의정부	24년 완공		- 합작법인(YG,네이버,위지윅 등)를 설립하여 13,000평 규모 스튜디오 조성(1개동 LED월)

※ 단, 자료 내 사용료 및 LED WALL의 제원은 변동될 수 있음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24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시립반려동물 병원 설립·운영 근거를 관련 조례에 마련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2조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 : 삭제
- 제22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관련 내용 : 신설
 - ①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름.
 - ③ 공공진료소 업무
 - 1. 진료, 중성화 수술 2. 질병 예방, 보건위생관리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진료 등 대상동물
 -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 2.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와 길고양이
 - 3. 장애인·기초수급자·만65세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려동물
 - ⑤ 진료비 감면 등 공공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9. 30. ~ 10.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26.(가족보육과-227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16.(기획예산실-1276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9. 30.(순천시 공고 제2022-2183호)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을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 ③ 공공진료소는 반려·유기동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진료, 중성화 수술
 2. 질병 예방, 보건위생관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공공진료소에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대상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와 길고양이
 3. 장애인·기초수급자·만65세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려동물
- ⑤ 그 밖에 진료비 감면 등 공공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22조(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③ 공공진료소는 반려·유기동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진료, 중성화 수술 2. 질병 예방, 보건위생관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공진료소에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대상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신 설>

개와 길고양이

3. 장애인 · 기초수급자 · 만65세이

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반려동물

⑤ 그 밖에 진료비 감면 등 공공
진료소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 따로 정한다.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22조(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진료, 중성화수술 등으로 사업 진행
- 진료장비 및약품 구입비, 진료수의사 인건비, 운영비 등 추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971,875	-401,875	-142,500	-142,500	-142,500	-142,500
세입(a)	178,125	28,125	37,500	37,500	37,500	37,500
세출(b)	1,150,000	43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971,875	401,875	142,500	142,500	142,500	142,500
시비	971,875	401,875	142,500	142,500	142,500	142,5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세입

- 장애인·기초수급자·만65세이상 독거노인 반려동물 진료비
 - 2023년 : 9개월×25일×평균 하루 5건×50,000원×50%=28,125천원
 - 2024년부터 : 12개월×25일×평균 하루 5건×50,000원×50%=37,500천원

나. 세출

- 진료장비 구입 : 250,000천원
 - 진료실(진료대,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수술처치실(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조제실(약제기구 등), 임상병리검사실(현미경, 세균 배양기, 원심분리기, 멸균기 등), 기타 장비·기구
 - 사업기간 : 2023년
- 진료약품, 소모성 의료용품 구입 등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23년부터 매년
-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 포함) : 130,000천원
 - 의사 100,000천원, 진료보조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23년부터 매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 | | |
|---------|--------|-----------------|
| ○ 동물자원과 | 과장 | 탁종수(☎ 749-8784) |
| | 동물보호팀장 | 강제경(☎ 749-3093) |

참 고

관련법령 등 자료

□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7조(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치유센터 내의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공공진료소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유기동물의 진료
2. 반려·유기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3. 반려·유기동물의 건강진단
4. 반려·유기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5. 반려·유기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공공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생략)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갖.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8조의2 관련)

개설자	시설기준
수의사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어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어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임상병리검사실 현미경·세균배양기·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5.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위 표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 중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 및 진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순천시내 동물병원 현황

계	대동물	소동물(반려동물)	기타
21개소	8개소	12개소	전남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순천시장)

☐ 타 지자체 운영사례

○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 근무인원 : 2명(수의사 1, 진료보조 1)
 - ※ 수의사 : 수의직 공무원
- 진료대상 : 유기동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만 65세이상 소유 반려동물
- 진료비 : 민간병원 실비 평균가의 30% 적용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 운영내용 :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아·미용 등
 - ※ 담양군 내 동물병원 없음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병원

- 근무인원 : 4명(수의사 2, 진료보조 2)
 - ※ 진료수의사 : 시간선택제임기제(5급)
- 진료대상 : 유기동물 보호센터 내 반려동물
- 운영시간 : 10:00~18시(연중 무휴)
- 운영내용 :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아·미용 등

순천시 남도농특산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2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순천시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명칭 변경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감면 조항 신설
- 현 운영체계에 맞춰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
 - 순천시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로 알기 쉽게 변경
-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단순화 등 (안 제5조)
 - 농식품유통과 직접 운영 중이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단순화
-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 신설 (안 제8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른 입점업체 사용료 징수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2. ~ 11.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7.(여성가족과-2385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6.(기획예산실-1393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2.(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2-22호)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홍보·판매를 위해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이하 “농특산물판매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특산물판매점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둔다. 다만, 필요 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매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특산물판매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 홍보·판매
2.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농특산물판매점의 전시·판매 품목은 순천시 관내 및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으로 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농특산물판매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용도) ①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변경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생산자 및 가격 표시) 농특산물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에 생산자 주소와 성명 및 정찰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농특산물판매점 입점업체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운영 시 농특산물판매점 업무 지도 및 운영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판매점 운영 방법의 결정
2. 농특산물판매점 사용료 결정
3. 입점 업체 및 품목 선정
4. 그 밖에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친환경농업과장

다.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관련 단체, 농산물 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준용)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순천시 남도농특산물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농특산물판매점 입점업체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 남도농특산품관(99㎡, 국가정원 서문 기념품관 옆)
- 연간 사용료 수입 : 4,597,960원(감면 30% 후) → 3,218,560원

5.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 과 장 김구현(☎ 749-8686)
- 농산물유통팀장 김성진(☎ 749-8673)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운영현황

1 일반 현황

- 시 설 명 : 순천시 농특산품판매점
- 위 치 : 국가정원1호길 47(서문 출구 기념품판매장 옆)
 - * 이전운영 : 2021. 4. 28. (당초 : 서문 주차장 앞)
- 시설규모 : 1동(지상 1층) / 99㎡
- 사 업 비 : 21,630천원(시비) - 운영 소요경비
- 근 무 자 : 2명(농식품유통과 공무원)
-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위원회(위원수 : 9명)
 -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
- 전경사진



외부



내부

2 관련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2013. 4. 30. 제정)

3 운영경과

-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사업 계획 수립 : 2012. 10. 10.(정원관리부)
-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사업 : 2013. 2. 15. ~ 4. 15.(2동, 708m²)
 - 국가정원1호길 7(서문 주차장 옆) * 現 국가정원역사관
- 남도농특산품관 운영 : 2013. 4. 19. ~ 2020 4. 27.
 - 리모델링 보강공사 : 2014. 12. 22. ~ 2015. 2. 11.
- 남도농특산품관 이전 운영 : 2020. 4. 28. ~ 현재
 - 국가정원1호길 47(서문 출구 기념품판매장 옆)

4 입점업체 현황

- 입점업체 : 32개 업체 / 255품목
- 계약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
- 매 출 액 : 71,030,200원(2022. 9. 30.까지)
- 사 용 료 : 4,597,960원 → 3,218,560원 부과(30% 감면)
 -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근거 감면율은 100분의 30

5 운영성과

- 입점업체 및 판매액

(단위 : 원)

연 도	입점업체	품목수	판매액	기 타
2020년	29	247	104,566,400	
2021년	32	253	107,663,100	
2022년	32	255	71,032,200	9. 31.기준

- 주요성과

- 관내 생산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농특산물 판매처 다양화로 입점업체 매출확대에 따른 소득향상에 기여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01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의자 : 우성원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김태훈 의원,
오행숙 의원, 정광현 의원,
서선란 의원, 최병배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형폐기물 무상 배출로 수수료 비용 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 발급대상자 근거 규정 추가 마련 확대(안 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대형폐기물의 무료 수수료 범위 : 가구당 연 3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붙임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중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을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과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 등” 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중 “일반용 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은 가구당 연 3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22조(수수료의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형폐기물 무상 배출 수수료 부담 완화로 서민경제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2,630,000	535,000	530,000	525,000	520,000	520,000
세입(a)	2,7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세출(b)	12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시비	12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비	12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0,000

○ 산출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500세대(9월말기준) 중, 500세대(연간 대형폐기물 배출세대) * 30천원 = 15,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우성원

신 · 구조문대비표

기 준	개 정 안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 등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 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 종량제 봉투의 -----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은 <u>가구당 연 30,0 00원 이내로 제한한다.</u>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반용 봉 투는 전분기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통하 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③ -----종량제 ----- ----- 단, 소급적용은 해 당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형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02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의자 : 강형구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1. 제정이유

-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붙임 1】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에서 관리하거나 위

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예산지원)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강형구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9.	안전기획과
2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3.	재난대응과
3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5.	시민안전과
4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4.	주민안전담당관
5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0.	안전총괄과
6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8. 14.	안전관리팀
7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13.	
8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9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2.	안전총괄과
10	군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29.	안전관리과
11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29.	안전총괄과
12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26.	안전도시과
13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4.	시민안전관
14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5.	사회재난
15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13.	
16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1.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 4. 29.	
18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0.	안전총괄과
19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20.	안전총괄과
20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12.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0.	안전총괄과
22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0.	안전총괄과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9.	안전총괄과
24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17.	재난안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4.	
26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6.	안전과
27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3.	안전총괄과
28	무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2.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29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5.	재난관리계
30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0.	365안전센터
31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0.	안전총괄과
3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4.	
33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4.	도시안전과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3.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3.	
36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5.	재난안전과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12.	안전재난담당관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25.	
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2.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1.	도시안전과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2.	
4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6.	안전재난과
43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19.	도시안전과
44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45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22.	시민안전과
46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5.	시민안전과
47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4.	
48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7.	
49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	
50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1. 6. 9.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52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7.	
53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 8. 2.	안전총괄과
54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6.	안전총괄과
55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0. 1. 8.	시민안전과
56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9.	안전관리과
57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8.	안전총괄과
58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2.	
59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16.	
60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2020. 3. 30.	
61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0.	예방대응과
62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4.	안전정책팀
63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1. 4. 15.	안전총괄과
64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안전총괄과
65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1. 12. 31.	
66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6.	안전총괄과
67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0.	안전총괄과
68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4.	안전정책과
69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9.	안전건설과
70			
71			
72			
73			
74			
75			
76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양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03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양동진 의원, 서선란 의원,

최병배 의원, 이복남 의원,

발의자 :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오행숙 의원, 김영진 의원,

이영란 의원

1. 제정이유

-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순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나. 미세 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붙임 1】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순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순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홍보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안 제5조(실태조사),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안 제7조(포상)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양동진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2021. 12. 27.	자원순환과
2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2021. 9. 30.	물환경과
3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2022. 1. 6.	자원순환과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선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04호
----------	--------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의자 : 서선란 의원, 이복남 의원,
최병배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희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원 의원,
양동진 의원, 오행숙 의원,
장경순 의원,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의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순천시장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
- 입주자 등에게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게 할 책무를 부여함

다. 기본시설의 설치·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인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적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등의 지원(안 제5조)

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과 홍보, 포상 등(안 제6조~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5. 예산상황: 붙임2 비용추계서

【붙임 1】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편의시설이란 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담금 비용추계서

1. 조 례 명 :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5조(지원범위),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포상)

3. 비용추계의 전제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도모 및 현안사항 해결 등 사
용자와 고용자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315,000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세입(a)	-	-	-	-	-	-
세출(b)	315,000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315,000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시 비	315,000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소요예산 : 63,000천원/연

○ 지급기한 : 매년 3월말(개·보수), 반기별(인권보호 교육)

○ 산출기초

■ 경비실 내·외부 개보수 : $1,815\text{천원/m}^2 \times 17\text{m}^2/\text{개소} = 30,000\text{천원}$

※ 아파트 경비실 개보수 준공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 경비원 인권보호 교육(민간위탁) : $1,500\text{천원/회당} \times 2\text{회} = 3,000\text{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서선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10. (생략)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2022. 5. 6.	
2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2021. 7. 12.	도시건축과
3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8. 11.	주택과
4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0.	도시정비과
5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2.	
6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9. 25.	건축과
7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2021. 12. 15.	
8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주택과
9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1. 16.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5.	건축과
1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5.	공동주택관리팀
12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 4.	
13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020. 11. 12.	건축과
14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6.	주택행정과
15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미화노동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9. 29.	
16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4. 15.	
17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31.	주택과
18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0.	공통주택과
19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2022. 9. 20.	
20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2.	
21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2020. 7. 30.	주택과
22	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0.	
2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0.	건축과 건축물관리TF팀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0.	
26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4. 11.	
27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1.	건축주택과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21.	건축과
29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22.	건축주택과
30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2021. 6. 30.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9.	주택정책과
32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2020. 12. 28.	
3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0. 19.	공동주택과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10.	공동주택지원센터
35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8.	건축과
36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0. 5.	건축행정과
37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2. 20.	
38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	2021. 8. 30.	건축허가과
39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31.	건축과
4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4. 13.	
4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9. 1.	창조건축과
4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5.	공동주택계
43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22. 4. 6.	
44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5. 20.	공동주택과
45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28.	주택과
4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31.	
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9. 17.	주택과
4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25.	공동주택지원과
49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9. 23.	주택과
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8. 6.	주택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1. 5.	주택과
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주택과
5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6. 10.	주택과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2. 30.	
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2020. 12. 30.	일자리경제과
5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 13.	
5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7. 15.	공동주택과
5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주택정책과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1. 12.	
6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0. 7.	주택과
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7. 9.	주택과
6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2020. 12. 16.	주거재생과 공동주택관리팀
63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14.	공동주택과
64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0. 5.	
65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8. 6.	
66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17.	주택과
67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주택과
68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5.	건축과
69	여주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12.	허가민원과
70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13.	허가건축과
71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2020. 11. 20.	도시재생과
72	완주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5. 24.	건축과 공동주택팀
73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9. 27.	주택관리과
74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9. 24.	건축주택과
7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28.	건축과
76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1. 16.	건축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77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3. 7.	
78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2021. 4. 5.	
7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26.	건축과
8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31.	
8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8. 2.	주택관리과
8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7. 12.	건축과
8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2. 28.	
84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22.	건축과
85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2022. 3. 10.	
86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1. 3.	
87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2021. 4. 15.	주택과
88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0. 30.	
89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30.	
90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6.	주택과
91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26.	
92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9.	
93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7. 19.	민원봉사실
94	홍성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6. 30.	주택과
95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15.	
96			
97			
98			
99			
100			
101			
102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382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부터 제2조)
- 다중이용업소 중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제3조)
-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대상(제4조부터 제5조)
-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제6조)
- 해체허가 및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제7조부터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제9조부터 제10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9. 30. ~ 10.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26.(가족보육과-2278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16.(기획예산실-1272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9. 30.(순천시 공고 제2022-2181호)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순천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 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 다만,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경량철골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 1인 : 시장이 지정한 자
2. 영 제31조제3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산출근거>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1회 : 5백만원

※ 5백만원 * 6개소/년 : 3천만원

5. 작성자

○ 건축과	과장	조용병(☎ 749-6202)
	건축물관리팀장	신범식(☎ 749-6385)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건축물관리법령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조례안 제3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례안 제4조](#))

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조례안 제5조 제1항](#))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조례안 제5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례안 제6조)

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조례안 제7조제1항)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례안 제7조제2항)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조례안 제8조)

시행령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2.>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례안 제9조)

시행령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빈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사유 및 해체 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에 따라 해체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해야 한다.

③ 빈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 해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날 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조례안 제10조](#))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2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고물가 · 고환율 ·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가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매년 인상하고 있는 하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2417호 인상유예 내용의 부칙 신설
 - 2023년도 하수도요금 인상 유예⇒2023년도분은 2022년도 요율 적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7. ~ 11. 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14.(가족보육과-24417)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14.(기획예산실-14481)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6.(순천시 공고 제2022-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2417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차별 요금인상은 시민부담경감을 위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2023년도분 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3년도분 요금은 2022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u> <u>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차별 요금인상은 시민부 담경감을 위해 제1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2023년도분 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3년도분 요금은 2022년 도분 요율을 적용한다.</u>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하수도 조례 부칙

-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차별 요금인상은 시민부담경감을 위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2023년도분 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3년도분 요금은 2022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2024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
세입 (하수도사용료)	118,028	21,855	23,202	23,733	24,029	25,20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
자체수입 (특별회계)	118,028	21,855	23,202	23,733	24,029	25,209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3. 2.~2024. 1.

○ 산출액 : 24,029백만원

○ 산출근거(업종별 사용량×m³당 단가(원))

- 2023년 하수도사용료 급수수익

- 가정용 급수수익: 17,830천 톤×635원=11,322백만 원
- 일반용 급수수익: 6,296천 톤×1,863원=11,731백만 원
- 욕탕용 급수수익: 365천 톤×1,180원=431백만 원
- 산업용 급수수익: 462천 톤×1,180원=545백만 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정수연(☎ 749-648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2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고물가 · 고환율 ·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가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매년 인상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18호 인상유예 내용의 부칙 신설
 - 2023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2023년도분은 2022년도 요율 적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7. ~ 11. 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14.(가족보육과-24416)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14.(기획예산실-14481)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6.(순천시 공고 제2022-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1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차별 요
금인상은 시민부담경감을 위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
요금표의 2023년도분 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3년도분 요금은 2022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u> <u>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u> <u>차별 요금인상은 시민부담경감을</u> <u>위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u>[별표2] 업종별 요금표의 2023년도분</u> <u>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3년도분</u> <u>요금은 2022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u>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부칙

-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차별 요금인상은 시민부담경감을 위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 요금표의 2023년도분 요금인상을 유예한다. 2023년도분 요금은 2022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2024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
세입 (상수도사용료)	118,639	22,798	23,694	23,725	23,976	24,44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
자체수입 (특별회계)	118,639	22,798	23,694	23,725	23,976	24,446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3. 2.~2024. 1.
- 산출액 : 23,976백만원

○ 산출근거(업종별 사용량×m³당 단가(원))

- 2023년 상수도사용료 급수수익

- 가정용 급수수익: 21,561천 톤×657원=14,165백만 원
- 일반용 급수수익: 7,361천 톤×1,294원=9,525백만 원
- 욕탕용 급수수익: 27천 톤×1,115원=31백만 원
- 산업용 급수수익: 308천 톤×830원=255백만 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정수연(☎ 749-6486)

【관련법령】

수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관련법령】

하수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